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家族関係登録簿などの証明書交付の申請書											
신청 대상 申請対象	□대상자 □対象者	성 명 氏 名 등록기준지	(한자:) (漢字:)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 호 住民登録番 号	- -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裏面の作成方法5に該当する場合、登録基準地の記載なく住民登録番号で申請で								
신청내용 申請內容	1. 一般 1. と 2. 注 1. と 3. 3. 4. 4. 4. 中 수受 열閲 そ 2. 2. 2. 2. 2. 2. 2. 2. 4. 4. 中 수受 열閲 そ 3. 3. 4. 4. 5. 5. 6. 6. 6. 7. 7. 4. 4. 4. 4. 5. 5. 6. 6. 7. 7. 4. 4. 4. 4. 5. 5. 6. 6. 7. 7. 4. 4. 4. 4. 4. 5. 5. 6. 6. 7. 7. 4. 4. 4. 4. 4. 4. 4. 4. 4. 4. 4. 4. 4.	①③③⑤⑤①①③③⑤⑤①①③③⑤⑤①②③⑤⑤⑦②毫婚 心事 のの	···()件)건 ···()件 년월일 접수신고 F月日 受付申告 르 제적 : 본적								
호(뒷부분6자	□全部公開	신청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載した場合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개신청역부 住民登録番 号(下6桁の) 公開申請有 無	□申請	対象者	公開申請事由	□ 2.□ 3.□ 3.□ 4.	及びそ 가족관 家族関 合 공무원	が申記 の代理 - 계등 - 引係登録 ! 등이	青対1 関人で ・・・・・・・・・・・・・・・・・・・・・・・・・・・・・・・・・・・	象者本 ごある場 計 출석 署の出 よ 목적	人又は 場合 신청 席申請 임을 소	本人の父母、養多 記이 재판상 필요 i人が裁判上、必要 - 명한 경우 ることを疎明した:	를 소명 要性を疎明する	
	① 등	 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	 적초본 1통당 500)원	_
	① 登録事項別の証明書又は除籍謄本1通あたり1,000ウォン、除籍抄本1通あたり500ウォン											
	②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2										적부 열람 1건	당
※ 수수료	200원											
※ 手数料												覧
	③ 手数料免除対象者に該当する場合は手数料なし											
청구사유												
請求事由												
소명자료												
疎明資料	ما تر ه	느티유 신	1-21-0 (이 닭.								_
	·	-더뉴 신 보 전송		. –	l 서브			즈며	서 바-	급정보 전송에 동	이하니다 □	
アポスティー										。上 じ。 1 。 情報の転送に同意		
	I-BH	関する「		ノロかけした	1 TK V / TA	1.2.10		нтг.>1				
	성명		(인) 또	— 는 서	명 생년	년월일 -				신청인자격	의	
	氏名		(印)又	なは署名	名 生年	三月日				申請人資格	の	
신 청 인										휴대전화번호		
申請人	주소									携帯電話番号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접수번호						20	년	월	일			
受付番号	-					20	年	月	日			
								○○시(구)·읍·면장 귀하				
								00)巾(区)・邑・面長 殿		
切り取り線												
			집	덬		수			증			
						, 付			証			
受 付 접수일자: 20							· 선청인 성명:					
								8 U ~8 青人のJ				
접수번호:			•							l:		
受付番号:							납부수수료액: 納付手数料:					
및 호기합성. 열람·교부예정시간:							○○시(구)·읍·면장 (인)					
閲覧・交付									` ′	・邑・面長 (印)		
			الما الما)))	· · · · · ·	داداه	.1 . 1			나의 부정하 방법으	그 리크 비키시	

※ 법 제117조 3호: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 法第117条第3号:第14条第1項・第2項及び第42条に違反して嘘、その他の不正な方法により他人の申告書類を閲覧したり、申告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又は登録簿などの記録事項に関する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者は3年以下の懲役又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ます。法第11条第6項に違反して発給対象でない人に故意をもって発給した人も同じ処罰を受けます。
- ※ 발급관서가 "시"인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 発給官署が「市」である場合は「区」が設置されてない市を指します。

작 성 방 법

(뒤 쪽)

作成方法

(裏面)

- ※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기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 共同相続のように申請対象が数人である場合は申請対象欄に「別紙と同様」と記載した後、別紙書式を利用して記載す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申請書と別紙に割印(署名)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아래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申請書を作成する場合には対象者の氏名と登録基準地を正確に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但、本人、配偶者、直系 血族とその代理人の場合と下記5の場合は対象者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でも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郵便で請求 するときは登録基準地を必ず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本人の現在有効な親権・後見に関する事項を確認したい場合は、特定証明書の交付を申請してください。
- ※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 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 ※ アポスティーユとは、国内で発給された文書を他の国に提出して証明書として機能させる国際協約で、駐韓公使や領事の確認がなくても協約国家で公文書として効力が認められます。
- **※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手数料免除**(家族関係の登録などに関する規則第28条第4項)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 国家や地方自治体の公務員が職務上の必要によって請求する場合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② 「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条第2号の受給者が請求する場合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③ 「独立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独立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④ 「国家有功者など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国家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 する場合
 -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⑤ 「枯葉剤後遺疑症患者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第4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枯葉剤後遺疑症患者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⑥ 「参戦有功者礼遇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5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参戦軍人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⑦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7条によって登録決定された5・18民主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⑧ 「特殊任務遂行者支援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3条第3号によって登録された特殊任務功労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⑨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⑨ 出生届出人に記録日から2週間以内に出生事件本人の基本証明書を最初1回発給する場合
 - ⑩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⑩ 他の法律に手数料を免除する規定がある場合
-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本人が請求する場合は申請書を作成しなくてもいいが、本人などの代理人が委任を受け請求する場合には申請書に本人などの署名又は捺印した委任状と身分証明書(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公務員証、外国人登録証、国内居所申告証、国際運転免許証、外国国家機関名義の身分証明書、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が記載された障碍者登録証など)の写し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但し下記の各項に該当する疎明資料を提出する場合は、本人でない場合も本人などの委任なしで証明書の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① 国家、地方自治体が職務上、必要及び法令上の根拠に基づいて文書で申請する場合
 -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② 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の各手続きにおいて必要な場合
 -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③ 他の法令により本人などに関する証明書の提出を求められる場合
 -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④ 民法上の法定代理人(後見人、遺言執行者、相続財産管理人、不在者財産管理人)
 -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⑤ 債券・債務など、財産権の相続と関連して相続人の範囲を確認するための場合
 -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⑥ 保険金又は年金の受給権者を決めるために必要なとき
 -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及び補償に関する法律」により土地などの所有者の相続人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場合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請求事由欄及び申請人の資格欄は具体的に**下記の例**のように記載し、申請人欄の記載をしなかったり、請求事由を記載すべき人が請求事由を記載しない場合又は申請人や請求事由を虚偽記載した場合は登録事項別の証明書又は除籍簿の閲覧及び謄本・抄本を発給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 **例)請求事由:**家事訴訟関連(○○○の○○事件)法院提出用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申請人の資格:本人の父、○○○の代理人

-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申告書類の閲覧を含む)は下記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って交付の請求が可能です。
 -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① 成年者が本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
 - ② 친양자의 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 ② 特別養子の実父母・養父母が本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は特別養子が成年者であることを疎明した場合
 - ③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③ 婚姻当事者が「民法」第809条の親族関係を把握しようとする場合
 -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④ 法院から事実照会の嘱託を受けたり、捜査機関が規則第23条第5項に基づいて書面で申請する場合
 - ⑤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 ⑤ 「民法」第908条の4に基づき養子縁組を取り消したり、同法第908条の5に基づき養子離縁をする場合
 - ⑥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 ⑥ 「養子縁組特例法」第16条に基づき養子縁組を取り消したり、同法第17条に基づき養子離縁をする場合
 -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 ⑦ 特別養子の福利のために必要であることを特別養子の養父母が具体的に疎明した場合
 -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⑧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が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各手続において必要である場合

-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⑨ 債券・債務など、財産権の相続と関連して相続人の範囲を確認する場合
-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⑩ 家族関係登録簿を作成しないまま死亡した人の相続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が必要な場合
- 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 ① 法律上の利害関係を疎明するため特別養子の実父母・養父母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その該当法令と具体的な疎明資料及び必要とされる理由が示された場合
-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3. **住民登録番号の公開申請有無欄**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って公開の申請有無とその事由を選択し、その 他の場合は記載しません。
 - ①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① 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出席した申請人が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載し、該当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② 申請書の申請人欄に記載された申請人が本人又はその父母、養父母、配偶者、子である場合
 -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③ 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出席した申請人が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の各手続において必要であることを疎明する 資料(例:法院の裁判書、補正命令書など)を添付して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④ 国・地方自治団体の公務員(「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及び補償に関する法律」第8条による事業施行者の職員を含む) が公的な目的で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例:公文書、裁決書など)を添付して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4. 上記の3の規定にも関わらず、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住民登録番号の下6桁の公開を制限しません。
 -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 ① 従来の「戸籍法の施行規則」付則(2004.10.18)第3条に規定されたイメージ電算除籍簿など
 -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 ② 従来の「戸籍法」による戸籍用紙で作成された除籍簿
-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 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下記の場合、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直接出席して申請対象者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申請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を添付すると**除籍などの閲覧及び謄・抄本、登録事項別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위 제1.의 ①, ②, ③, ④, ⑥, ⑦ 및 제2의 ⑧, 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 上記の第1の①、②、③、④、⑥、⑦及び第2の⑧、⑨に基づいて請求する場合、法院の補正命令など法令として 定めた疎明資料を提出した場合及び相続人が相続関係の確認のために請求する場合